

November 29, 2019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11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11. 21. ~ 11. 27.)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2019. 11. 20.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어 2019. 11. 21.부터 시행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②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 ③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등이 있음.

[\[참고자료\]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금융위2] 공시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 심의(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관련

2019. 11. 22.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30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함(개선 과제는 '20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①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 ②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 ③ 증권인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공시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참고자료\] 공시 회계 분야 개선 과제, 존치 과제 목록](#)



[금융위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

2019. 11. 25.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별 금융업법에서 적용되던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적 적용, ② 판매규제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③ 과태료 부과기준 일원화(원칙적 최대 1억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9.11.25\) 통과](#)



[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2019. 11. 6.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함(2020. 1. 1.부터 시행). 위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서, ①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가능, ② 과거 5년 역산시의 기산일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로 변경 등이 있음.

[\[참고자료\] 입찰담합 심사지침 개정](#)



[국토부1]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 추진

2019. 11. 20. 국토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 등에 대해 대폭 강화된 안전,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발표함(추후 관련 특별법 제정이 예정).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 진동 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 ② 대심도 지하에 구분지상권 설정 제외, ③ 법률상 대심도에 대한 기준 규정 등이 있음※ 대심도: 지하실, 기초 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한계심도(약 40m)보다 깊은 깊이

[참고자료]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국토부2]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개최

2019. 11. 24. 부산 강서구에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착공식이 개최됨.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신도시 위에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센서 등의 스마트인프라와 혁신기술을 계획단계부터 접목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스마트 수질개선 시스템 및 미세먼지 측정 등 도시 기반 로봇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임. 아울러, 정부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기본구상 수립, 태국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등 아세안 국가들과 총 20건 이상의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참고자료] 스마트시티 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과기부]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 토론회 개최

2019. 11. 27.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전략의 일환으로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플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6GHz 대역 비면허 주파수 공급, ②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 ③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이 있음

[참고자료] 5G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 토론회 개최



[산자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등 경제협력 추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9. 11. 23. ‘한-싱가포르 표준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9. 11. 25.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 ‘한-필리핀 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대한 공동선언문’ 서명, ‘한-인니 CEPA’ 타결, 2019. 11. 26. ‘베트남 유통서비스산업 역량강화와 상생발전 사업 양해각서’ 체결 등이 이루어짐. 구체적으로 (i) 싱가포르와의 표준협력 양해각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를 포함, (ii)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로서, 이번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시장개방과 함께 경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 (iii) 필리핀과의 FTA 상품협상으로 우리측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등을 개방하고 필리핀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클러치 등),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합성고무 등) 등을 개방할 예정, (iv)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도네시아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 (v) 베트남과의 양해각서는 유통산업 인력양성 지원, 영세상인 점포정비 지원 등의 내용이 있음

[참고자료] 국제표준협력과 한-싱 양해각서(MOU) 체결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제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 기재사항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6인)]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주도록 하는 등 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어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7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3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은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여러 신기술과 융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개별 부처나 사업별로 분산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최근 벌어진 일본 무역규제 사태를 계기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연구현장에서 인허가를 위한 서류, 절차 등은 그대로 두고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

3.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개최일시	토론회명	개최의원	장소
12. 3. 14:00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	송갑석(민)	회관 대회의실
12. 4. 10:00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오제세(민)	회관 제1세미나실
12. 5. 14:00	4차 산업시대, 가스배관 안전관리 어디까지 왔나	김관영(바)	회관 제2소회의실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관 및 PR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법적 자문 및 이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적 자문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종합적·전략적·실용적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